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9. 12. . (제 회)	

산 립 보 호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12.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산림보호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대상으로 시·도지정문화재를 해제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나무의사 보수교육의 유예사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확히 하고,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공단지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가 가능한 산업단지에 포함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발굴행위를 산림보호구역내 가능한 행위로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매장문화재의 조사·발굴(안 제3조제2항제18호)

- 산림보호구역내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행위를 행위제한에서 허용함

나. 농공단지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대상 포함(안 제6조제2항제1의3호)

- 농공단지를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제외) 해제 대상에 포함함

다. 시·도지정문화재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대상 포함(안 제6조제7항)

- 산림보호구역내 위치한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문화재 구역과 중첩된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할 수 있도록 함

라. 나무의사 보수교육의 유예 (안 제12조의12)

- 질병, 부상 등으로 정상적인 나무의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휴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수교육을 유예하도록 하며, 보수교육이 유예된 사람은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의견조회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지표조사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발굴

제6조제2항제1의3호 중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
단지”를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
로 한다.

제6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법 제11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란 제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2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12(보수교육의 유예 등) ① 법 제21조의13제1항 단서에서 “질병·
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질병, 부상, 출산, 군복무, 장기 국외 체류 등으로 정상적인 나무의
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휴직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보수교육이 유예된 사람은 그 사유가 해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수교육의 유예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의3, 별표 1의5, 별표 1의7,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무의사 등의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의7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 동안 자격을 정지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21조의6 제6항제1호	자격취소			
나. 법 제2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경우	법 제21조의6 제6항제2호	자격정지 2년	자격취소		
다. 법 제21조의5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21조의6 제6항제3호	자격취소			
라. 법 제21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21조의6 제6항제4호	자격정지 2년	자격취소		
마. 나무의사 등의 자격정지기간에 수목진료를 행한 경우	법 제21조의6 제6항제5호	자격취소			
바. 고의로 수목진료를 사실과 다르게 행한 경우	법 제21조의6 제6항제6호	자격취소			

사. 과실로 수목진료를 사실과 다르게 행한 경우	법 제21조의6 제6항제7호	자격 정지 2개월	자격 정지 6개월	자격 정지 12개월	자격 취소
아. 법 제21조의12에 따른 처 방전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경 우	법 제21조의12	<u>자격</u> <u>정지</u> 2개월	<u>자격</u> <u>정지</u> 6개월	<u>자격</u> <u>정지</u> 12개월	<u>자격</u> <u>취소</u>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제12조의8제6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1조의7 제2항제1호	지정취소		
나.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21조의7 제2항제2호	시정명령	지정취소	
다. 지정 당시 제출한 나무의사 등의 양성과정과 다르게 운영한 경우	법 제21조의7 제2항제3호, 영 제12조의8 제5항제1호	시정명령	시정명령	지정취소
라. 제 12조의8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의7 제2항제3호, 영 제12조의8 제5항제2호	시정명령	지정취소	
마. 제 12조의8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교육장소가 아닌 곳에서 양성과정을 운영한 경	법 제21조의7 제2항제3호, 영 제12조의8 제5항제3호	시정명령	지정취소	

우				
바. 산림청장의 시정명령을 1개월 내에 이행하지 않 은 경우	법 제21조의7 제2항제3호, 영 제12조의8 제5항제4호	지정취소		
사. 법 제21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 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 검사를 거부한 경우	법 제21조의14제1항	시정명령	시정명령	지정취소

나무병원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세부기준(제12조의10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5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 동안 영업을 정지하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21조의10 제1항제1호	등록 취소			
나.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21조의10 제1항제2호	영업 정지 6개월	영업 정지 12개월	등록 취소	
다. 법 제21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의10 제1항제3호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영업 정지 12개월	등록 취소
라. 법 제21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21조의10 제1항제3호	등록 취소			
마. 법 제21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21조의10 제1항제4호	영업 정지 12개월	등록 취소		

바. 영업정지 기간에 수목진료 사업을 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법 제21조의10 제1항제5호	등록 취소			
사. 폐업한 경우	법 제21조의10 제1항제6호	등록 취소			
아. 법 제21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거나 조사·검사를 거부한 경우	법 제21조의14 제1항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영업 정지 12개월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위반행위자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5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호	100	300	500
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차량 통행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57조제5항제1호	10	10	10
다. 법 제16조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 사업장이나 가정 등에서 배출된 다량의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2) 그 밖의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법 제57조제3항제1호	50 10	70 15	100 20
라. 법 제16조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7조제5항제2호	10	10	10
마. 법 제21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u>진료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진료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u>	법 제57조제3항제1의2호	<u>50</u>	<u>70</u>	<u>100</u>
바. 법 제21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u>수목을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 처방전등을 발급한 경우</u>	법 제57조제3항제1의3호	<u>50</u>	<u>70</u>	<u>100</u>
사. 법 제21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u>정당한 사유 없이 처방전등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u>	법 제57조제3항제1의4호	<u>50</u>	<u>70</u>	<u>100</u>
아. 법 제21조의12제4항을 위반하여 <u>나무의사의 처방전 없이 농약을 사용하거나 처방전과 다르게 농약을</u>	법 제57조제1항제2호	<u>150</u>	<u>300</u>	<u>500</u>

<u>사용한 경우</u>				
<u>자. 법 제21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u> <u>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u>	<u>법 제57조제3</u> <u>항제1의5호</u>	<u>50</u>	<u>70</u>	<u>100</u>
<u>차.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u> <u>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u> <u>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같은 조</u> <u>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u> <u>다)</u>	<u>법 제57조제3</u> <u>항제2호</u>	30	40	50
<u>카.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u> <u>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꽂초</u> <u>를 버린 경우</u>	<u>법 제57조제4</u> <u>항제1호</u>	10	20	20
<u>타.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u> <u>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u> <u>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u>	<u>법 제57조제4</u> <u>항제2호</u>	10	20	20
<u>파.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u> <u>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u> <u>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u>	<u>법 제57조제4</u> <u>항제3호</u>	10	20	20
<u>하. 법 제45조의8제10항을 위반하여</u> <u>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경우</u>	<u>법 제57조제2</u> <u>항</u>	50	100	2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생략)	제3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4호까지, 제14호 및 제16호는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에 적용하지 않으며, 제13호는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해방지보호구역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적용하지 않는다.	② ----- ----- ----- ----- ----- ----- ----- ----- ----- ----- ----- ----- ----- ----- ----- -----.
1.~17. (생략)	1.~17. (현행과 같음)
<u><신설></u>	1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지표조사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③~④ (생략) 제6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① (생략) ② 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을 말한다. 1.~1의2. (생략) 1의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중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u>도시첨단산업단지</u>, 「방위사업법」 제3조제8호의 방위산업 및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의 항공우주산업 관련시설 1의4.~13. (생략) ③~⑥ (생략) <u><신설></u>	<u>의 발굴</u> ③~④ (현행과 같음) 제6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1.~1의2. (현행과 같음) 1의3. ----- ----- ----- -----·<u>도시첨단산업단지</u>·<u>농공단지</u>, ----- ----- ----- ----- 1의4.~13. (현행과 같음) ③~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11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u>”란 제6조제4항
---	--

⑦ (생략) <신설>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12조의12(보수교육의 유예 등) ① 법 제21조의13제1항 단서에서 "질병·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질병, 부상, 출산, 군복무, 장기 국외 체류 등으로 정상적인 나무의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휴직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보수교육이 유예된 사람은 유예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수교육의 유예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연 락 처	(042) 481 - 4076